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89

발의연월일: 2021. 1. 22.

발 의 자: 김철민·강득구·고영인

권인숙 • 김영배 • 김윤덕

서동용・송재호・신동근

이해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및 「지방세법」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정부는 2017년부터 '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'을 국정과제로설정하고,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.

그런데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50. 4%에 불과하며,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및 산업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임.

이에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(안 제72조제1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758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중 "79퍼센트"를 "70퍼센트"로, "21퍼센트"를 "30퍼센트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	제72조(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
관한 특례) ① 제37조 및 제63	관한 특례) ①
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	
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	
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	
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	
세를 더한 세액의 <u>79퍼센트</u> 를	<u>7</u> 0퍼센트
부가가치세로, <u>21퍼센트</u> 를 지방	<u>30퍼센트</u>
소비세로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